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견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11. 24.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8. 11. 24
다. 상정일자 : 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사회 위원회(98.12.8)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홍수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는 제2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 지역현황과 전망
 -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편의 위주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 생활실천 및 건강한 사회건설을 이루고자 하는데 본 계획의 추진 목표가 있음
 - 본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과 추후 전망, 보건업무 향후 4년간 역할변화 및 계획방향, 보건소 업무 향후 추진전략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 지역사회 호응도 제고 등 주거에 따른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 특수사업 등 조직 및 인력계획 시설과 장비계획을 연차별 계획을 주요내용으로 우리구의 여건과 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춘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계획서 내용중 다음과 같은 미비한 점도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인구변화 및 구조자료에서 동별 전체인구수를 97년도 통계자료를 사용치않고 주민등록인구 통계보고서를 활용작성하여 사하구 통계연보와 불일치 한 사항은 97년 5월 제59회 임시회시 제1차 보건의료계획 심사시 지적된 바 있으나 금번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둘째, 의료보장인구은 97년도 전체인구수가 의료보장 종류별 인구와 불일치하며, 타의료지역 인구수를 누락 의료보장종류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작성함이 가하나 의료보장 인구수와 실제 우리구의 인구와 131.976명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정확한 조사에 의한 통계라 보기 어려움,

셋째, 우리구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이 아동복지, 노인복지, 정신요양시설, 노인정 등 187개소가 있으나 사회복지관 4개소를 3개소로 파악함으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방대한 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인 복지관 실태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임.

넷째, 본 계획서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작성 후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의견을 수렴토록 되어있으나, 계획내용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방대한 내용으로 작성된 상태임으로 형식적인 면이 내포되어있고, 본 계획서 기본계획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은 설문조사 64개항으로 질문내용이 구성되어, 설문조사 참여자는 64개항을 정확하게 읽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문지에 작성하여야 하나, 항목이 너무많아 불충분하게 작성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항목을 대폭줄여 간단하게 작성 설문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본 계획을 작성하는데 많은 기간과 인력이 소요되었고 97년도 계획서상 미비점을 발견 보완을 하였으나 그대로 통계상 수치를 일치시키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전년도 9월말까지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미비점을 연차별 시행계획시 수정 보완토록하고 본 계획이 계획에 거치지 않고 알차고 내실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